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20
----------	-----

2021. 6. 23.(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나. 제출일자: 2021년 5월 31일
-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 라. 상정일자: 2021년 6월 11일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교육행정수요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총수: 3,402명 → 3,409명 (+7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3,070명(변동없음)
 - 본청(직속기관 포함) 3급: 4명 → 5명 (+1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20명 → 19명 (△1명)
 - 교육전문직원: 312명 → 319명(+7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74명 → 281명 (+7명)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402명에서 3,409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개정 정원	증감내역	비고
일반직	3,070명(변동없음)	3급 +1명(기획국장) 4급 △1명(교육문화원장)	
교육전문직	319명(증 7명)	일반직 3급 상당 △1명(기획국장) 일반직 4급 상당 +1명(교육문화원장)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7명	

-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7명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기관(부서)명	세부내역	소요정원	비고
학교혁신과	미래형 원격수업 등 지원	1	국가정책수요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2	
단체교육연수원	놀이교육, 학부모성장지원 센터	1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생활교육, 학부모	2	증평센터
충주교육지원청	중등직업교육 학교지원	1	북부거점
계		7	

- 본 조례 개정안은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등 국가정책수요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놀이교육 및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다만, 기획국장을 기존 일반직 3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에서 일반직 3급으로 변경하고, 교육문화원장을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으로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02명” 을 “3,40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12명” 을 “319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0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3급	5		5		
4급	22	1	19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19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81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402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3,081명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312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409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 : <u>319명</u>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3,402</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07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u>4</u></td> <td></td> <td><u>4</u></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23</u></td> <td>1</td> <td><u>20</u></td> <td>2</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3,03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u>312</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 <td>38</td> <td></td> <td>27</td> <td>11</td> <td></td> </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 <td><u>274</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 이하 소계</td> <td>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u>3,402</u>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u>4</u>		<u>4</u>			4급	<u>23</u>	1	<u>20</u>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u>312</u>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74</u>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3,409</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3,07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u>5</u></td> <td></td> <td><u>5</u></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u>22</u></td> <td>1</td> <td><u>19</u></td> <td>2</td> <td></td> </tr> <tr> <td>5급 이하 소계</td> <td>3,03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u>319</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 <td>38</td> <td></td> <td>27</td> <td>11</td> <td></td> </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 <td><u>281</u></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 상당 이하 소계</td> <td>6</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u>3,409</u>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u>5</u>		<u>5</u>			4급	<u>22</u>	1	<u>19</u>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u>319</u>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81</u>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u>3,402</u>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u>4</u>		<u>4</u>																																																																																																																																																																																																										
4급	<u>23</u>	1	<u>20</u>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u>312</u>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74</u>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u>3,409</u>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u>5</u>		<u>5</u>																																																																																																																																																																																																										
4급	<u>22</u>	1	<u>19</u>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u>319</u>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81</u>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교육행정 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 관련근거: 2021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행정직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교육부 학교정책과-312(2021.1.14.)】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7명(교육전문직원 7명)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1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870,751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가. 교육전문직원 124,393,000원×7명=	870,751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 처우개선을 적용 (2.73%)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보통교부금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세출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정규직인건비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재원조달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의존 재원	소계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870,751	894,523	918,943	944,030	969,802	4,598,049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